[붙임 2]

공·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표(00구)

도서관명 : (공립/사립) 공립 ☆☆☆ 도서관

♦ 비고를 참고하여 평가하고,실제 운영평가표상에는 기입력 내용 삭제 후, 도서관 상황에 맞게 작성

영 역	세부 영역	항목	세부기준	배점	점수	비고
		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(5)	지역주민 포함되어 구성	5		-위원회 관련 규정 -위원회 회원 명단 등 확인
	계획 (8)		도서관 직원으로 구성	3		
			없음	0		
		연간 운영계획	운영계획 수립	3		-운영계획서 확인 -공공도서관 또는 자치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
		(3)	운영계획 미수립	0		게획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가능(도서관명 명시되어 있을 것)
	설립목적	작은도서관	도서 대출, 독서·문화 프로그램 등에 모든 지역주민 참여 가능	6		10111110
	적합성 (6)	설립취지 적합성 (6)	특정종교 또는 특정 이용자만 이용	0		이용안내, 이용규정 등 확인
목 적	각종규정 명문화 (6)	각종 도서관 규정 등	문서화된 도서관 규정 있음	6		도서판 규정, 업무지침, 운영 매뉴얼 등 해당
의		(6)	문서화된 도서관 규정 없음	0		
적 -:			연 300만원 이상	5		-2015년 집행액,
합		자료구입비	연 100만원 ~ 300만원 미만	3		(자부담, 시비 및 구비
성		(5)	연 100만원 미만	1		지원금, 후원금 등 포함) -구입 영수증 또는 서류 등 확인
			없음	0		
및	예산		연 1,000만원 이상	5		-2015년 집행액,
 재	규모의	인건비	연 500 ~ 1,000만원 미만	2		(자부담, 구비 지원금,
^1	적절성 (15)	(5)	연 500만원 미만	1		후원금 등 포함) -인건비 지출내역 등 확인
(40)			없음	0		
, ,			연 500만원 이상	5		-2015년 집행액,
		운영비	연 200 ~ 500만원 미만	3		(자부담, 시비 및 구비
		(5)	연 200만원 미만	1		지원금, 후원금 등 포함) -구입 영수증 또는 서류 등 확인
			없음	0		
	-3) -3)	기관 자부담 여부	80% 이상	5		-2015년 총집행액 기준 (총집행액:자부담+후원금+시
	재정 자립도 (5)	(후원금 포함)	50% ~ 80% 미만	3		비, 구비 등의 지원금으로 자료구입비, 인건비, 운영비,
		(5)	50% 미만	1		시설비 등 합계)
	(3)	<u>-공립은 해당사항 없음</u> <u>(체크 하지 말것)</u>	없음	0		-자부담율 : (자부담+후원금)/총집행액*100
	대출권수		일평균 40권 이상	8		-2015년 일평균 대출권수
서	및	대출 권수	일평균 20 ~ 40권 미만	5		-수기대출자료,,도서관리시스템
비	이용자	(8)	일평균 1 ~ 20권 미만	3		통계자료 확인 -연간 대출권수 / 연간개관일수
스	수		대출 제한	0		
(60)	(15)	이용자수	연 5,000명 이상	7		-2015년 연간 이용자수 -대출자, 도서관 행사 참여자
		(7)	연 4,000명~ 5,000명 미만	5		관내 열람자 등 도서관

			연 2,000명~ 4,000명 미만	3	
			연 1,000명~ 2,000명 미만	2	이용자만 해당
			연 1,000명 미만	1	
	개관일 및 시간 · (15)	개관일수	연간 250일 이상	8	
		(8)	연간 250일 미만	0	
		개관시간	주간 40시간 이상	7	-주간 20시간 미만은
		(7)	주간 20시간 이상~40시간 미만	4	지원대상 제외
	문화프 로그램 운영 현황 (25)		연49회 이상	10	-주기적 독서
		┗ 독서·문화프로그	연25회~48회	8	문화프로그램의
		램 실시 횟수 (10)	연13회~24회	6	* 실시횟수(프로그램별 실시횟수 합계)
			연1회~12회	4	실시됫구 쉽게)
			미실시	0	* 강좌명, 프로그램명 기재
		독서·문화프로그램 행사 수 (5)	연간 5회 이상	5	2015년 추진한
			연간 1~4회	3	책축제, 도서나눔행사 등 일회성 이벤트
			미실시	0	*행사명 기재
		독서·문화프로그램 연간 총 참여인원 수 (10)	500명 이상	10	-2015년 독서·문화프로그램
			300명~ 500명 미만	5	총 참여인원수 -프로그램 관련 자료,
			300명 미만	0	참여자 명단 등 확인
	만족도 조사(5)	이용자 만족도 조사 (5)	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	5	UD = V = E = A
			이용자 만족도조사 미실시	0	설문 조사지 등 확인
	연간 장서 증가량 (8)	장서 증가량 (8)	연 400권 이상	8	
			연 300권 ~ 400권 미만	6	
			연 200권 ~ 300권 미만	4	지난 1년간(2015) 증가한 장서수
장			연 100권 ~ 200권 미만	2	0/16 0/11
서			연 100권 미만	0	
· 관	장서수 (12)	장서량 (8)	4,000권 이상	8	-2015년 12월말 기준
리			3,000권 ~ 4,000권 미만	6	총 보유 장서수
(20)			2,000권 ~ 3,000권 미만	4	-1,000권 미만은
			1,000권 ~ 2,000권 미만	2	지원대상 제외
		연속간행물 - (4) -	5종 이상	4	-2015년 구독한
			1 ~ 4종 없음	0	정기간행물 종수 -정기간행물명 확인
시	공간 적정규모 (4)	공간면적 - (4) -	 99m² 이상	4	- 현관.휴게실, 복도, 화장실
			66m² ~ 99m² 미만	3	┃ 신단 등의 며전으
			33㎡ ~ 66㎡ 미만	2	포함되지 아니함 -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면적만 해당 -33m'미만은 지원대상 제외
설 (10)		F 13 3 3 7 7 - 7	도서관리프로그램 사용	3	-33m 미만은 시원대상 제외 도서관리를 위한 별도의
(10)	전산 기기	도서관리프로그램 _ 사용 여부(3)	도서관리프로그램 미사용	0	체계화된 프로그램 사용여부(KOLASYS-NET 등)

		이용자용 컴퓨터	 2대 이상	3	
	(6)	보유 대수(검색용)	 2대 약장 1대	2	
	(0)	(3)	 없음	0	
	인력 및	전담인력 (10)	 2명 이상	10	-상근인력(관장 포함)
			 1명	5	
				+ -	*복지관, 아동센터 등
	전문성		없음	0	다른업무도 함께 하는 경우 전담인력 아님
_	(15)	전담인력의	사서자격증 소지자(1명 이상)	5	
인 ==		전문성(5)	사서자격증 미소지자	0	
력 자			15명 이상	8	-도서관 운영 정규인력
사 원 (30)	자원	상시 자원봉사자 (8)	10 ~ 15명 미만	6	아닌 지원인력으로 작은도서관에 등록되어
	봉사자		5 ~ 10명 미만	4	정기적으로 자원봉사
(00)	(8)		1 ~ 5명 미만	2	수행하는 인원수 -자원봉사자 명부 등 확인
			없음	0	-사건당사사 당구 등 확인
	전문교육	그이 되지 되스	연간 2회 이상	7	-2015년 1년간 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(행복도우미
	참여	교육 참여 횟수 (7)	연간 1회	4	워크숍 등 포함) 참여 횟수
	(7)	11.7	없 음	0	
	온라인	홈페이지,인터넷카페,	운영	10	-개설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'운영하지
-	홍보 (10)	블로그, SNS 등 운영(10)	운영하지 않음	0	않음'에 해당 -운영시 주소 등 기재
·홍 보	도서관	타 도서관과의	 참여	10	-각급 도서관과의 협력
	교류협력	네트워크 여부	미참여	0	(공공,학교,작은도서관 등) -도서관협의회 참여 등
교	(10)	(10)	 3회 이상	10	2015년에 문화 및 교육기관
류		운영실적	 ১শ °/১ 1 ~ 2ছা	6	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(만 관에서 시행하는
협	지역사회	(10)	 없음	0	책축제 참여, 학교, 유치원,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의
력	문화·교육		W. E	+ -	협력활동 포함)
(40)	교류협력	동아리 개수	3개 이상	10	동아리회원명부,
	(20)	(10)	1 ~ 2개	5	동아리활동 관련자료 등 확인
			없음	0	712
		노인 및 장애인	편의 시설 있음	3	독서확대기,
추	우수	편의 시설 유무(3)	편의 시설 없음	0	장애인 열람책상 등
가 (10)	운영	도서관 알리미	5회 이상	7	2015년 1년간 언론매체, 지역신문, 반상회보 등에 게재
(10)	(10)	활동 자료	1~4회	3	회수 및 소식지 발간 횟수
		(7)	없음	0	당
		총	점	210	

자치구 담당자 : 직급 성명 (인)

작은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 관계자 : 소속 성명 (인)

작은도서관 전담사서 : 성명 (인)

평가대상 도서관 관리자(운영자) : 직책 성명 (인)

지원 제외 작은도서관 기준

- 작은도서관의 법적 기준 미달인 경우

※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(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) 「별표1〕작은도서관 시설 기준

시	도서관자료		
건물면적	열람석	エハゼイエ	
33제곱미터 이상	6석 이상	1,000권 이상	

- 특정 종교서적이 전체 서적의 30% 이상인 경우
- 주 5일 미만 개방하는 도서관 (주5일 이상 개방해야 함)
-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(개방일에는 1일 4시간 이상 개방해야 함)
- 간판(안내판)이 없거나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작은도서관
- 운영주체가 기업인 작은도서관
- 영리를 목적으로 유료회원제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
- 자치구에서 부실운영이라고 판단한 경우